

주목할 만한 내용:

1. 제41/2020/ND-CP호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계약자세 납기 연장
2. Covid-19 에 감염되지 않은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기한내 확정신고
3. GRAB 할인 코드- 인보이스 발행 및 공제 가능 비용 결정;
4. FY 2020 법인세 감면에 관한 국회의 2020년06월19일 제116/2020/QH14호 결의
5. Google 및 Apple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대한 VAT
6.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고정 자산 구매 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7. 온라인 영어 수업 소득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8.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의 현지 수출입

01

조세 관리

02

개인소득세

03

법인소득세

04

부가가치세

05

외국인 계약자세

06

무역 및 관세

조세관리



종합 정보

2020년 상반기 세무 업무 수행 현황 - 세무총국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

i. 상반기 수행 결과 : Covid-19의 영향으로 세금 징수 금액 및 세무 조사/감사 건수가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

- 총 징수액: **574조2370억동으로 계획 대비 45,8% 수준**이며 2019년동기대비 **3,9% 감소** (최근 몇년간 가장 낮은 수치)
- 세무 감사/조사 : **29,280 개 기업으로 계획 대비 31,67% 수준**이며 2019년 동기 대비 **17,16% 감소**. 반면, 징수액은 2019년 동기 대비 28조 9405억 5천만 동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72개 기업에 대한 이전 가격 조사/감사를 실시하여 추가 징수 및 벌과금은 2,125억 5천만동.

ii. 하반기 계획:

- 세금 징수 : 계획 금액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목표치 설정 (2020년 계획금액의 약 55%)
- 세무 감사/조사: 계획 달성을 위해 비현장 세무 감사/조사에 집중 (2020년 계획의 약 68%)
- 조세 정책: 신규 조세 행정법 (2020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제38/2019/QH14호 법령)에 대한 지침 및 납부세액 징수 및 관리 방안 문서 작성에 집중

지침 문서(Guidance Rulings)

제 41/2020/ND-CP호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계약자세 납기 연장

제41/2020/ND-CP호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계약자세 납기 연장과 관련하여 세무총국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개인, 단체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자이며 외국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 공제 또는 납부를 대신하는 경우, 외국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정부의 세금 및 토지사용료 납기 연장에 대한 2020년 04월 08일 제41/2020/ND-CP호 시행령에 따른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다.

(세무총국의 2020년 06월 18일 제2491/TCT-CS호 OL)

신규 규정

소기업에 대한 2020년 법인세 ("CIT") 납부액 30% 감면에 관한 제 116/2020/QH14호 결의 및 시행령 초안

Covid-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기업들의 생산 및 영업 활동의 유지 및 재개를 위한 또다른 재원 마련 목적의 시의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국회는 2020년 6월 19일 기업, 협동조합, 비사업 단위 및 기타 단체에 대한 2020년 법인세 감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7월초 재무부는국회결의안 수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였다. 시행령 초안은 감면 대상 소득 결정, 일시 세금납부, 확정 신고 및 세금 감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

- 2020년 매출액이 2,00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2020년 과세연도 납부해야 할 CIT의 30% 감면
- 기업은 분기 CIT 납부시 또는 2020년 CIT 확정 신고시 감면세액을 자체적으로 확인함
- 세무 당국은 세금 감면 승인 여부를 기업에 통보할 필요가 없음



개인소득세



지침 문서

공식개발지원(“ODA”) 전문가에 대한 개인소득세 (“PIT”) 면제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2020년 06월 10일 세무총국은 PIT에 관한 제 2352/TCT-DNNCN 호 OL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ODA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베트남 국적 전문가는 PIT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로 소득에 대한 PIT 면제는 ODA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인 전문가에게만 적용된다.

Covid에 감염되지 않은 외국인 납세자는 PIT 확정신고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해야함

2020년 6월 12일 세무총국은 Vinh Long 세무국의 연간 PIT 확정신고에 관한 제 2396/TCT-DNNCN 호 OL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Covid-19가 발병한 지역에 거주하지만 Covid-19에 감염되지 않은 외국인 납세자는 재무부의 2013년 11월 06일 제 156/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10조 4항 및 2015년 2월 27일 제 26/2015/TT-BTC호 시행 규칙 제2조 5항의 규정에 따른 PIT 확정신고 서류 제출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또는판매아니라참고목적으로만사용

법인소득세

지침 문서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GRAB 할인 코드 구매시 영수증 발행 및 비용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06월 23일 제55967/CT-TTHT호 OL

2020년 6월 3일 하노이 세무국은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GRAB 할인 코드 구매시 영수증 발행 및 비용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한 제55967/CT-TTHT호 OL을 발행했다.

GRAB이 승객운송, 우편, 배달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할인 코드를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GRAB은 적절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그리고 GRAB의 할인코드 구매 및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적절한 인보이스와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CIT상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일시적 사업 중단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와 관련한 세무총국의 2020년 06월 26일 제 2621/TCT-KK호 OL

일시적 사업 중단 기간 동안 2014년 기업법 제200조 3항에 규정된 활동에 대해 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 중단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일시적 영업 정지 기간 동안 2014년 기업법 제 200조 3항에 규정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사업일시 중단을 등록한 기관에 사업 재개를 미리 통보해야 하며, 세금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납세자의 사업 및 영업활동 일시 중단 기간에 대한 세무 행정은 2019년 6월 13일 제 38/2019/QH14호 조세 관리법령 제37조에 따른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또는판매아니라참고목적으로만사용

지침 문서

구글 및 애플을 통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베트남 기업들이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 개인·단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 베트남에서 수행한 서비스로 보고 수출에 적용되는 0% VAT 세율 대신 10% VAT 세율이 적용된다.

(세무총국의 2020년 06월 03일 제2270/TCT-CS 호 OL)

부가가치세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또는판매아니라참고목적으로만사용



외국인 계약자세



지침 문서

해외에서 고정 자산 구매시 자문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베트남 기업이 외국 공급자와 고정 자산 구매계약 체결을 위해 외국 기업(외국인 계약자)을 통해 공급자 확보, 해외 법률 자문 및 지원,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외국인 계약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원국인 계약자세 부과 대상이다(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 포함).

고정자산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제 45/2013/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박닌 세무국의 2020년 06월 22일 제 2072/CT-TTHT호 OL)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구매한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얻을 경우 외국인 계약자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구매한 서비스를 추가적인 혜택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서비스 혜택의 성격에 따라 해당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계약자세는 외국기업의 베트남내 수익(일반적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한 경우)에만 부과되는데 위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외국인 계약자가 서비스 구매자이지만, 외국 기업이 구매한 서비스가 제3자 고객에게 제공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0년 06월 23일 제 2750/TCT-CS호 OL)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베트남 기업이 외국 기업과 베트남내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기업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세가 부과 된다:

- 제 71/2007/NĐ-CP호 시행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외국 계약자가 로열티 명목으로 수익을 분배받은 경우 10%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06월 12일 제51237/CT-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또는판매아니라참고목적으로만사용



무역 및 관세



신규규정

Covid-19 이후 관세당국의 기업 지원 계획

관세총국은 관세행정 개혁을 가속화하고 Covid-19 유행 및 종료 이후 기업의 상품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0년 세관 신고 규정 준수 여부 조사 및 평가를 일시적 연기한다. 특히 특별 조사 및 통관 사후 감사는 위반 징후 또는 위반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 기업이 Covid-19로 인한 생산 및 사업상 어려움을 사유로 관세감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세관 책임자는 각 건별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 제 47/2020/TT-BTC호 시행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2020년 01월 23일 이후 등록된 신고서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 원산지증명서 (C/O) 제출 기한이 적용된다.

해당 결정서는 2020년 06월 19일부터 유효하다.

(관세총국의 2020년 06월 19일 제 1616/QĐ-TCHQ호 결정서)

지침문서

외국인투자기업(FDI) 현지(On-spot) 수출입

외국인 투자기업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007년 04월 04일 제04/2007/TT-BTM 호 시행규칙에 따라 현지수출입을 수행해야 한다.

- FDI 기업이 생산한 현지 수출품의 경우:
 - 수출계약서상 외국 업체가 지정한 베트남내 납품 장소가 명시되어야한다.
 - 위에서 언급된 외국 업체가 아닌 베트남 수입자는 현지 수출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외국중개상과의 수입계약을 체결해야한다.
- 고정자산 또는 생산설비를 위해 현지수입한 기계, 장비, 도구 및 생산 원자재의 경우:
 - 수출계약서상 외국 업체가 지정한 베트남내 납품 장소가 명시되어야한다;
 - 현지 수입을 수행한 외국 기업의 경우 상기에 언급한 현지수출 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중개상과 수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호치민 관세국의 2020년 06월 15일 제 1758/HQHCM-GSQL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또는판매아니라참고목적으로만사용



무역 및 관세

지침문서

기업은 임대 기계 재수출 시 잔존 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야함

제134/2016/ND-CP호 시행령 제35조 1항에 따라 납세자가 재수출 시점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회계 법령 규정에 따라 재화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 신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업이 재화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관세총국의 2020년 06월 19일 제4170/TCHQ-TXNK 호 OL)



기타 지침문서

1. 무역구체조치 제외 결정;
2. 통관 후 추가 신고를 불가능한 경우;
3. 수입품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불가;
4. 재수출 목적 일시 수입 재화, 환적 재화, 보세창고 보관 재화에 대한 수출입 국경 검문소
5. 직접 운송 증명 서류;
6. VNCUFTA 관세혜택을 적용을 위한 B24 코드 신고;
7. 관세기관의 C/O 기각 사유통보;
8.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양식에 따른 C/O 신고;
9.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세 환급시 상업송장 사용 가능;
10. 포장된 원자재의 라벨 표시;

11.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세 혜택은 2020년 초부터 적용;
12. 비관세지역 기업에 제공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0% 적용
13. 철도개발계획 관련 수입세 면제 조건;
14. 전자 세관 신고시 서류 제출;
15. 일시 수입 후 재수출 부품
16. 조세관리법령에 따른 법률 문서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또는판매아니라참고목적으로만사용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0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